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80 발의연월일: 2024. 10. 14.

발 의 자:부승찬・이기헌・박용갑

안규백 • 추미애 • 정진욱

한정애 · 정성호 · 신정훈

김현정・조 국・박홍근

김준혁 • 윤후덕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점을 밝히고, 제1조제2항에서 "대한민국의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분명히 함. 이어서 제74조제2항에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 이에 국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군대임.

그런데, 헌법 제74조제2항에 근거하여 국군의 조직과 편성에 관해서 정하고 있는 「국군조직법」은 그 정통성의 근거에 관해서 밝히지 않 고 있음. 이로 인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국군의 역 사성과 역할, 국민의 군대로서의 지위 등 그 정통성을 부정하는 일들 이 일어나고 있음. 이에 헌법에 따라 조직과 편성 등 국군의 근간을 정하는 「국군조 직법」에 국군의 정통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1조). 법률 제 호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방의"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를 계승하고, 국민의 군대로서 국방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u>국방의</u> 의무	제1조(목적) 이 법은 <u>대한민국 임</u>
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	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과 편성의 대강(大綱)을 규정함	역사를 계승하고, 국민의 군대
을 목적으로 한다.	<u>로서 국방의</u>